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5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임미애
이연희 · 장종태 · 박해철
전진숙 · 이수진 · 안태준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

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계획”을 “계획(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 및 명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 ② (생략)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다만, 국유재산 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처분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승인 을 받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 정하여야 한다.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계획(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 산의 규모 및 명세를 포함한 다)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